

1.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

1-1. 최종 징수율 산정

< 기본 징수율 >

광고매출액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값 (1.0, 2.0, 3.0, 4.0, 5.0)	+	$\frac{\text{사업자별 광고매출액} - 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시작값}}{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상한값} - \text{시작값}}$	×	조정계수 (0.9234)
---	---	--	---	------------------

※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%을 초과하는 경우, 150%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 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함

×

< 징수율 추가 감경 >

- KBS·EBS(공공성) : 1/3 감경
- 지역·중소지상파 : 1/3 감경
 ※ 당기순손실 발생 시 : 1/2 감경
- 종편·보도채널 : 14.23% 감경
-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총 자본의 10%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1/2 추가 감경



최종 징수율 결정

1-2.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

< 분담금 산출 >

방송광고 매출액 × 최종 징수율



< 면제 및 경감 >

구분	관련규정	내용
면제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	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,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
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
경감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



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

2.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

(단위 : %, 원)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1	(주)문화방송	중앙지상파	3.8222%	-	3.8222%	-	-	8,611,838,430
2	(주)에스비에스	중앙지상파	3.8749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4호에 따른 1/2 감경	1.9375%	-	-	5,361,613,740
3	한국방송공사	중앙지상파	3.8289%	방통위 고시 2019-10호	2.5526%	-	-	5,920,065,890
4	한국교육방송공사	중앙지상파	2.1282%	제5조 제1호에 따른 1/3 감경	1.4188%	-	-	314,864,240
5	목포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537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/3 감경	0.5692%	-	-	26,311,500
6	여수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7798%		0.5199%	-	-	21,952,920
7	(주)케이엔엔	지역민방	2.0006%		1.3337%	-	-	222,217,080
8	(주)티비씨 방송	지역민방	1.9003%		1.2669%	-	-	156,059,070
9	(주)광주방송	지역민방	1.8738%		1.2492%	-	-	139,545,370
10	(주)대전방송	지역민방	1.6179%		1.0786%	-	-	94,496,930
11	(주)전주방송	지역민방	1.0502%		0.7002%	-	-	39,817,160
12	(주)G1	지역민방	1.4248%		0.9499%	-	-	73,280,670
13	(주)경인방송	라디오	0.1880%		0.1253%	-	-	1,275,500
14	(재)불교방송	라디오	0.5927%		0.3951%	-	-	12,680,510
15	(재)극동방송	라디오	0.2901%		0.1934%	-	-	3,037,480
16	서울특별시 교통방송	라디오	0.0840%		0.0560%	-	-	254,470
17	(주)와이티엔라디오	라디오	0.2417%		0.1611%	1,869,553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238,760
18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48%		0.0098%	4,918		2,940
19	(주)와이티엔디엠비	DMB	0.1618%		0.1079%	606,395		338,390
20	부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8773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/2감경	0.9386%	-	-	106,259,140
21	대구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7036%		0.8518%	-	-	78,572,970
22	광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5607%		0.7804%	-	-	65,946,150
23	대전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5908%		0.7954%	-	-	68,515,800
24	전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041%		0.6021%	-	-	39,256,050
25	(주)엠비씨경남	지역MBC	1.8751%		0.9375%	-	-	105,239,560
26	제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0458%		0.5229%	-	-	29,608,010
27	울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1448%		0.5724%	-	-	35,480,690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28	(주)엠비씨강원영동	지역MBC	1.5095%		0.7548%	-	-	61,693,290
29	(주)청주방송	지역민방	1.0764%		0.5382%	-	-	31,366,540
30	(주)울산방송	지역민방	1.0259%		0.5129%	-	-	28,493,080
31	(주)제주방송	지역민방	0.9963%		0.4981%	-	-	26,873,590
32	춘천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295%		0.4147%	18,627,105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	-
33	안동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7863%		0.3932%	16,740,761		-
34	원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7511%		0.3755%	15,273,395		-
35	포항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077%		0.4538%	22,304,410		-
36	(재)평화방송	라디오	0.5415%		0.2708%	7,939,078		-
37	(재)원음방송	라디오	0.2975%		0.1487%	2,396,145		-
38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79%		0.0090%	8,675		-
39	한국디엠비(주)	DMB	0.0244%		0.0122%	16,089		-
40	유원미디어(주)	DMB	0.0971%		0.0486%	255,483		-
41	(주)엠비씨충북	지역MBC	1.7606%		0.8803%	3,820,278	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
42	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	지역민방	1.9507%		0.9753%	132,575,729	8,842,670	
43	(재)기독교방송	라디오	2.0827%		1.0413%	40,923,035	169,607,930	
44	(주)조선방송	종합편성	3.6949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4.23% 감경	3.1691%	-	-	3,210,094,750
45	(주)와이티엔	보도전문	2.8339%		2.4307%	-	-	1,299,243,100
46	(주)채널에이	종합편성	2.9245%		2.5083%	537,784,591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925,917,050
47	(주)매일방송	종합편성	3.0928%		2.6527%	196,903,846		1,592,730,220
48	(주)연합뉴스티브이	보도전문	2.4955%	2.1404%	342,710,983	472,839,580		
49	(주)제이티비씨	종합편성	3.7840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4.23%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1/2 추가 감경	1.3535%	2,425,249,983	-	120,244,750

※ 기본징수율 및 최종징수율은 소수점 네자리로 표기

3. 근거법령

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, 분할 납부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,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0. 8. 4.>
[제목개정 2020. 8. 4.]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-10호) 제8조(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, 징수율 감경사유,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